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사회복지9급 선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단위 : 명)

| 시험명 | 직급 | 직렬(직류) | 구분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 계 | | | | 336 | |
| 제1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9급 | 사회복지 (사회복지) | 일반 | 255 | 수원 20, 고양 24, 성남 7, 용인 19, 부천 12, 안산 10, 남양주 15, 안양 8, 화성 4, 평택 14, 의정부 19, 시흥 7, 파주 5, 김포 10, 광명 2, 광주 8, 군포 2, 오산 1, 이천 4, 양주 7, 안성 9, 구리 3, 포천 5, 의왕 5, 하남 9, 여주 6, 동두천 2, 과천 4, 가평 7, 연천 7 |
| | | | 장애인 | 23 | 수원 1, 고양 2, 성남 3, 용인 3, 부천 2, 안산 2, 남양주 2, 의정부 1, 파주 1, 광주 3, 오산 1, 이천 1, 안성 1 |
| | | | 저소득층 | 33 | 수원 1, 고양 5, 성남 2, 용인 2, 부천 1, 안산 3, 남양주 1, 안양 2, 화성 1, 의정부 2, 파주 1, 김포 2, 광주 3, 오산 1, 구리 1, 포천 1, 의왕 1, 하남 1, 과천 1, 연천 1 |
| | | | 시간선택제 | 25 | 수원 4, 고양 2, 성남 2, 용인 4, 남양주 2, 평택 2, 파주 1, 양주 4, 과천 2, 가평 2 |

2 시험과목

| 직급 | 직렬(직류) | 시험과목 (1·2차 병합시험) |
|----|----------------|---|
| 9급 | 사회복지 (사회복지)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에서 출제됩니다.
-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및 [별표 10] 산식에 따라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5과목, 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 시험시간은 100분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 실시 예정이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결과 “우수, 보통, 미흡” 등급 중 “우수”와 “미흡” 등급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결정방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를 참고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사회복지사 3급 이상(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자격증 취득을 예상할 수 있는 소명자료(붙임2 안내문 참조)를 해당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 응시 등을 위해 허위로 자격증 취득예정일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며, 자격증 발급신청 이후 자격증 발급(취득)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사전에 자격증 발급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거주지 제한

2017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2016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

마.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2)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최종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임용예정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

(3) 시간선택제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할 것을 예정하는 자

○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5시간의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우선 적용합니다.

○ 영리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 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5 문제출제

시험 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됩니다.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음)

6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은 기간 중 09:00 ~ 21:00) | 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 접수기간 : 1. 31.(화) ~ 2. 2.(목) [취소마감일 : 2. 6.(월) 21:00] | 필기시험 | 3. 24.(금) | 4. 8.(토) | 5. 8.(월) |
| | 면접시험 | 5. 8.(월) | 5. 18.(목) ~ 5. 20.(토) | 5. 29.(월) |
| 장애인·임신부 편의지원 신청자 증빙서류(붙임1)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예정자 소명자료(붙임2) 제출기간 | | | 1. 31.(화) ~ 2. 6.(월) ※ 2. 6.(월)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유효 | |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 (<http://www.gg.go.kr/sihum>)에 공고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확인기간 별도 안내)

7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1522-0660)로 문의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 (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3)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전화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접수마감일 이후 개인별 환급 예정)

나. 응시수수료 환급 :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액 환급됩니다.

(1)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환급)

(2)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이나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 자격정보 허위기재나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해 원서접수가 무효처리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지 않음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경기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가산대상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4)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합니다.

- (5)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 (6) 원서접수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취득예정자는 취득예정일·취득방법 등을 기재하고 [붙임2]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예정자 소명자료 제출 안내'를 참조하여 해당 소명자료를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증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미제출한 자는 원서접수를 무효로 함
- (7) 장애인·임신부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절차, 증빙서류 등은 [붙임1]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가. 대상시험 :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시간선택제는 10명) 이상인 시험단위
-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을 참고

9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 가.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 나. 실시방법 : 임용기관별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일반모집 인원이 없는 경우 초과합격제 미적용)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다음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에서 초과합격제를 미적용할 수 있음

10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 분 | | 가산비율 | 비 고 |
|---------|-------------|----------------------------------|---|
| 취업지원대상자 |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 의사상자 등 |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 참고 |
|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나.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의사상자 등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에서 확인

-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가 '나'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직무분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 |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워드프로세서 2·3급이 국가기술자격에서 제외됨에 따라, 舊 워드프로세서 2·3급은 가산대상 자격증이 아님 (舊 1급만 인정)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필기시험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및 가산비율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2)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11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다.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진출(전보)될 수 있습니다.
- 마.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됨
- 바. 필기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면접등록을 하여야 하며, 면접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아.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자. 자원봉사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2015. 2. 3. ~ 2017. 2. 2.)에 행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대상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제출기간에 봉사실적 인증서·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 헌혈도 자원봉사 실적으로 제출 가능(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기간 동안 헌혈자 본인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1회당 4시간 / 연간 최대 20시간 인정)
 - ※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 등에서 출력한 인증서 유효, 봉사일자·장소·내용·시간이 명기되고 해당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도 유효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무보수성·공익성·비영리성·비종파성·비종파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인정불가 사례 : 물품 및 현금 기부·후원, 종교 활동, 졸업 및 성적요건 충족을 위해 수행한 봉사 등)
- 차. 이번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위탁 출제하므로 문제책을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카.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임용기관의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하. 본 공고문은 경기도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www.gg.go.kr/sihu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31-8008-40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